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우리가요양원 | 2026 년 게시용

1. 계약의 목적

어르신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원조하며, 삶의 질 향상(정서적 지지 및 지원 강화)과 가족의 어르신 보호기능 보강, 가족의 휴식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,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 간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을 명시하여 준수하기 위함이다.

2. 계약기간

입소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따라 계약을 통해 입소할 수 있으며, 계약기간은 입소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계약해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종료 시까지 지속한다.

3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장기요양급여비용은 관계 법령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. 2026 년 시설급여비용(30 일 이용 기준)은 1 등급 2,792,100 원, 2 등급 2,590,200 원, 3~5 등급 2,446,200 원이며,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20%, 감경대상자는 12% 또는 8%를 적용한다.

우리가요양원의 비급여 비용은 운영규정에 따라 식사재료비 1 일 13,200 원(30 일 396,000 원), 간식비 1 일 3,000 원(30 일 90,000 원), 상급침실 이용료는 1 인실 1 일 20,000 원(30 일 600,000 원), 2 인실 1 일 10,000 원(30 일 300,000 원)으로 하며, 이미용비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하여 무료로 한다.

장기요양이용료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익월 5 일까지 납부하며, 등급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사유발생일 또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.

4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

-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입소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입소자의 퇴소 또는 전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③ 입소자 면회 및 외박·외출에 관한 권리
- ④ 입소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
-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·식사·생활상담·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⑧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하여 알 권리
- ⑨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퇴소(전원)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⑩ 시설의 협약·연계병원 외 특별한 경우 지정 병원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5.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① 입소자의 건강 및 병적 상태 등에 관한 자료를 시설에 제공할 의무
- ② 본인부담금, 식재료비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
-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시설에 통보할 의무
-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고 시설에 통보할 의무
- ⑤ 입소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·간병, 입·퇴원 절차 및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
- ⑥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·집기 등의 오손·파손·멸실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

6. 계약의 해제 및 종료

시설은 입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.

- ① 입소계약상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한 경우
- ② 월 입소비 또는 기타 시설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
- ③ 월 입소비 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여 납부능력이 없고, 그 지연이 시설과 입소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④ 시설의 승인을 얻지 않고 시설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⑤ 신원인수인의 의무에 따른 통지를 지연한 경우
- 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·용도 제한·전대 및 양도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- ⑦ 장기간 부재하여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⑧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
- ⑨ 배회성·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
- ⑩ 기타 이용계약을 위반한 경우

입소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30 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이 정한 계약해제서를 제출하며, 계약은 입소인의 사망 또는 시설이나 입소인의 계약해제에 따라 종료한다.

※ 본 게시사항은 우리가요양원 운영규정의 입소자관리규정(계약 목적·기간, 비용, 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, 계약의 해제 및 종료)을 기준으로 작성함.